

# 제1강 연말정산

2021년 12월

# 목 차

- I. 근로소득세
- II. 연말정산
- III. 국세청홈텍스

# I. 근로소득세

## 부가가치세

1. 매출금액	4,000
2. 매입금액	1,000
→ 3. 부가가치	3,000
4. 세율	10%
→ 5. 납부세액	300

## 사업소득세

1. 총수입금액	4,000	현금입금(+)
2. 지출(필요경비)	1,000	현금출금(-)
3. 소득금액	3,000	현금잔액
4. 소득공제	(600)	4인가족
5. 과세표준	2,400	
6. 세율	15%	
7. 산출세액	252	
8. 세액공제(감면)	(50)	
9. 결정세액	202	
10. 기납부세액	(120)	3.3% 원천징수
11. 납부(환급)할세액	82	익년 5월31일

# I. 근로소득세

사업소득: 쿼서비스배달원(940918)

1. 총수입금액	4,000	현금입금(+)
2. 지출(필요경비)	1,000	현금출금(-)
3. 소득금액	3,000	현금잔액
4. 소득공제	(600)	4인가족
5. 과세표준	2,400	
6. 세율	15%	
7. 산출세액	252	
8. 세액공제(감면)	(50)	
9. 결정세액	202	
10. 기납부세액	(120)	3.3% 원천징수
11. 납부(환급)할세액	82	익년 5월31일



<사례> 근로소득 : 연말정산

1. 총급여액	4,000	
2. 근로소득공제	1,125	=4,000x15%+525
3. 근로소득금액	2,875	
4. 소득공제	(600)	4인가족
5. 과세표준	2,275	
6. 세율	15%	
7. 산출세액	233.25	
8. 세액공제(감면)	(145)	
9. 결정세액	88	
10. 기납부세액	(55)	=45,740x12
11. 납부(환급)할세액	33	

연말정산

\* 경비율제도 고려하지 않음.

# I. 근로소득세 (연말정산표)

단계	결과	계산방법
1단계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b>비과세 소득</b>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b>근로소득 공제</b>
3단계	(-) 소득공제	<b>①인적공제, ②연금보험료공제 ③특별소득공제</b>
4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6%~42%)
6단계	(-) 세액공제	<b>①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②특별세액공제</b>
7단계	결정세액	
8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b>기납부세액</b>

## 소득공제

- 소득에서 차감
- 적용세율에 따라 공제효과 차이  
“고소득자” 에게 유리  
ex) **세율(6%~42%)**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차감
- 지출액의 12% ~ 15% 수준 공제  
“저소득자” 에게 유리

VERSUS

출처: 2020년 원천세직무교육자료, 국세청 원천세과 작성

# I. 근로소득세 (연말정산표)



항목	현행	개정
제로페이 사용금액 공제	15% 공제	40% 공제, 100만원 추가한도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한도없음	2000만원
자녀세액공제 대상 축소	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7세 미만 취학아동 제외

# I. 근로소득세

## 1. 총급여액

- ① 비과세근로소득 제외
- ②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등
- ③ 식대 월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 ④ 출산,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월10만원

## 2.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적 공제)

- ① 근로자 최저생활보장 목적
- ② 소득공제금액 (4,000만원x15%+525만원=1,125만원)

500만원이하	총급여액 x 70%	5,000,000	(70%-15%=55%)	2,750,000
1,500만원이하	총급여액 x 40% + 1,500,000	10,000,000	(40%-15%=25%)	2,500,000
4,500만원이하	총급여액 x 15% + 5,250,000			5,250,000
1억원이하	총급여액 x 5% + 9,750,000			
1억원초과	총급여액 x 2% + 12,750,000			

## 3. 근로소득금액(1-2) (4,000만원 - 1,125만원=2,875만원)

# I. 근로소득세

## 4. 소득공제

- ① 인적공제 :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50만원~200만원
- ②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 ③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소득공제
-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 5. 과세표준(3-4) (2,875만원-600만원=2,275만원)

## 6. 세율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 x 6%
4,600만원이하	과세표준 x 15% - 1,080,000
8,800만원이하	과세표준 x 24% - 5,220,000
1억5천만원이하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억5천만원초과	과세표준 x 38% - 19,400,000

12,000,000	(15%-6%=9%)	1,080,000
46,000,000	(24%-15%=9%)	4,140,000
		5,220,000



## 7. 산출세액 (2,275만원x15%-108만원=233.25만원)

# I. 근로소득세

8. 세액공제 (102.475만원 + 30만원 + 13만원 = 145.475만원)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233.25\text{만원} \times 30\% + 32.5\text{만원} = 102.475\text{만원}$ )

130만원이하	산출세액 x 55%
130만원초과	산출세액 x 30% + 325,000

② 자녀세액공제 : 1인(15만원) 2인(30만원), 3인(60만원), 4인(90만원)

③ 연금계좌세액공제 : 700만원 15%(총급여 5,500만이하), 12%

④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보험료세액공제 : 일반보장성보험료 x 12%

❖ 의료비세액공제 : 총급여 3%초과지급액(한도700만원) x 15%

❖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지급액 x 15%

❖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x 15%

⑤ 월세세액공제 : 월세액(750만한도) x 12%(총급여 5,500만이하), 10%

9. 결정세액 ( $233.25\text{만원} - 145.475\text{만원} = 87.775\text{만원}$ )

10. 기납부세액 ( $45,740\text{원} \times 12\text{개월} = 548,880\text{원}$ )

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② 지급명세서

# I. 근로소득세

월급여 (단위:만원)	12개월	
300	3,600	
	200	실상여
	200	추석상여
	4,000	
333.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1	2	3	4	5	6
이상	미만						
3,000	3,020	84,850	67,350	32,490	26,690	21,440	17,100
3,020	3,040	86,560	69,060	34,140	27,350	22,100	17,530
3,300	3,320	117,770	93,020	57,220	44,090	31,330	26,080
3,320	3,340	120,210	95,210	58,870	45,740	32,620	26,740
3,340	3,360	122,660	97,660	60,440	47,320	34,190	27,370

11. 납부(환급)할 세액 (88만원-55만원= 33만원)

- ① 1월~12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55만원)
- ② 정산후 납부할세액(88만원)
- ③ ① > ② : 환급
- ④ ① < ② : 추가납부

## II. 연말정산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3. 원천징수세액

1. 소득공제: 9,649,680원

① 인적공제

1,500,000원x4명=6,000,000원

② 연금보험료공제

149,980원x12개월=1,799,760원

③ 특별소득공제

154,160원x12개월=1,849,920원

④ 신용카드등공제: 총급여액 25%초과 사용액

	공제율	공제한도
신용카드	15%	300만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비(박물관, 미술관포함)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⑤ ①+②+③+④=9,649,680원

전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체 2021년 기준(계산내용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 급여
 원
 계산
초기화

근로자수
 150인 미만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000인 이상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구분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299,960 원	149,980 원	149,980 원
건강보험	228,660 원	114,330 원	114,330 원
건강보험 (장기요양)	26,340 원	13,170 원	13,170 원
고용보험	61,650 원	26,660 원	34,990 원
<b>합 계</b>	<b>616,610 원</b>	<b>304,140 원</b>	<b>312,470 원</b>

## II. 연말정산

### 사례1. 소득공제 추가

1. 총급여액	4,000	4,000
2. 근로소득공제	1,125	1,125
3. 근로소득금액	2,875	2,875
4. 소득공제	(600)	(600)
국민연금,건강보험등 소득공제		(365)
5. 과세표준	2,275	1,910
6. 세율	15%	15%
7. 산출세액	233.25	179
8. 세액공제(감면)	(145)	(145)
9. 결정세액	88	33
10.기납부세액	(55)	(55)
11.납부(환급)할세액	33	(22)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연말정산환급액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3. 원천징수세액

2. 세액공제: 366.475만원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233.25\text{만원} \times 30\% + 32.5\text{만원} = 102.475\text{만원}$ )

② 자녀세액공제 2인(30만원)

③ 연금계좌세액공제 700만원  $\times 15\% = 105\text{만원}$

④ 특별세액공제 12만원+12만원+90만원+15만원=129만원

❖ 보험료세액공제 : 100만원  $\times 12\% = 12\text{만원}$

❖ 의료비세액공제 :  $[200\text{만원} - (4,000\text{만원} \times 3\%) = 80\text{만원}] \times 15\% = 12\text{만원}$

❖ 교육비세액공제 : 600만원(초·중·고 300만원한도)  $\times 15\% = 90\text{만원}$

❖ 기부금세액공제 : 100만원  $\times 15\% = 15\text{만원}$

## II. 연말정산

### 사례2. 세액공제 추가

1. 총급여액	4,000	4,000
2. 근로소득공제	1,125	1,125
3. 근로소득금액	2,875	2,875
4. 소득공제	(600)	(600)
국민연금,건강보험등 소득공제	(365)	(365)
5. 과세표준	1,910	1,910
6. 세율	15%	15%
7. 산출세액	179	179
8. 세액공제(감면)	(145)	(145)
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221)
9. 결정세액	33	0
10.기납부세액	(55)	(55)
11.납부(환급)할세액	(22)	(55)

국민연금납입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연말정산환급액

## 연말정산일정표

시기	할 일
1.15(수) ~ 2.14(금)	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②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1.20(월) ~ 2.14(금)	①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② 제공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제출
1.20(월) ~ 2월 말	①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② 근로자 제출 소득공제·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3.10(화)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My홈텍스  
HomeTax, 국세청홈텍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계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검색 전체메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연말정산간소화) 제출 안함**

병원, 학교, 금융회사 등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1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합하면 사유로 1월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안내 바로가기

자주찾는 메뉴  
My 홈텍스, 연말정산, 환급요청, 15 종합상담센터, 종합부동산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부가치세 신고, 원천세신고, 환급수수료 사용내역조회, 전자금융거래서 징발청구

세금종류별 서비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세, 환급영수증, 종합소득세, 연말정산간소화, 소비세, 사업자등록, 원천세, 모의계산

공지사항, 상담사례, 홈텍스 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텍스안내 세무서 안내 통합실시간포털 지원실 공지사항 자주찾는상담사례 고객센터 전체메뉴 세무서지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경부세종2점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30128  
Copyright ©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HomeTax, 국세청홈텍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계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검색 전체메뉴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텍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주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 매일 08:00~24:00
-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8:00~22:00
-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8:00~24:00

### 이용절차 안내

- 01 공인인증서 로그인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
- 0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신청
- 0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조회
- 0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 해제
- 05 회사제출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근로자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제공동의 필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사업소득자) >

### 자료제공동의 신청 동의방법

▶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 본인인증 신청 (계공자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 필요) >
- 미성년자녀 신청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신청 (조회자와 계공자 모두 신청 가능) >
- 팩스신청 (신청서, 증명서류 등을 팩스 전송) >
- 세무서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 영수증 발급기관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제출·조회하는 화면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
- 자료제출 현황 조회 >
-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 >
-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 >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등록 >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안내 >

###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
- 제공동의 취소신청 >

### 매뉴얼-FAQ

- (근로자)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
- (근로자)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방법 >
- (근로자)자주하는 질문 >
- 연말정산 요약 >
- (영수증 발급기관)자료제출방법 >
- (기부금단체)자료제출 신청방법 >



# Ⅲ. 국세청홈텍스

My홈텍스 조동근님 회원정보 로그아웃 인증센터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상담센터 | 법령정보 | 화면크기 100%

HomeTax 국세청홈텍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검색 전체메뉴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 본인인증 ...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일괄제공 확인(동의)

귀속년도 2021년  전채월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등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월세액 (Housing Funds/ Monthly rent)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LT investment savings/ Venture investment trust)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

- 적용 월 선택  
(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 해제)
-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 내용 확인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 해제)
- 출력 및 내려받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내려받기)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 회사에 제출 (출력물, PDF, 온라인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도우미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 조회/발급

세금의 신고/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XML원본보기

· 주민번호수취분전환및조회

### 연말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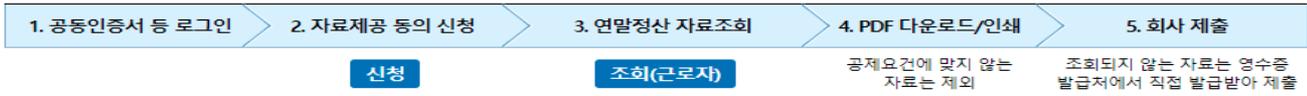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간소화

병원·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사업자 등 홈텍스 로그인 사용자 유형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연말정산 자료 조회) : 매일 06:00~24:00
- 영수증 발급처(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6:00~22:00
- 기부금 단체(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 ▶ 연말정산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사업소득자) >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 오류 신고 및 연락처 조회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 영수증 발급처 전화번호 조회 >

####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 수단 안내

- 본인인증 신청 >
- 미성년자녀 신청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

####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 본인 현황 조회 >
- 동의 취소 >

#### 동의/취소 방법(설명서)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아래 방식에서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
- 팩스신청 >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 동의 신청 진행 상황 조회 >

## Ⅲ. 국세청홈텍스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 ▶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 >

- \* 근로자가 회사에 동의 신청 하였어도, 근로자 본인의 [확인] 절차가 있어야만 연말정산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제공됩니다.
- \* 근로자 편의를 위해, 동일회사 계속 근무자는 한 번만 [확인]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매뉴얼 & FAQ

#### ▶ 근로자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 >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 연말정산 요약 >

#### ▶ 영수증 발급처용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방법 >
-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신청 승인 방법 >
- 자료제출 요령(자료실 468번) >

#### ▶ 원천징수의무자용(회사)

- 전자문서 API 자료실 >

### 이용방법 문의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126 ▶ 1 ▶ 5
- 연말정산 세법상담 ☎ 126 ▶ 2 ▶ 3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126 ▶ 1 ▶ 3 ▶ 2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신 후 하단에 확인(동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를 일괄제공 근로자로 등록한 회사정보가 조회되며, 확인(동의)시 선택한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제공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자료는 연말정산 이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기장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포함), 납세조합)는 국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간소화자료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일괄제공 확인(동의) 정보

신청인 성명	조동근	*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	연말정산을 진행할 회사를 선택하세요. ▼
--------	-----	------------------	------------------------

### ④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원천징수의무자(기장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포함), 납세조합)에 신청일 이후 매년 일괄 제공하는 것을 확인(동의) 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확인(동의)하기

### ④ 민감정보 삭제 안내

▲ 내용 펼치기

### ④ 제공동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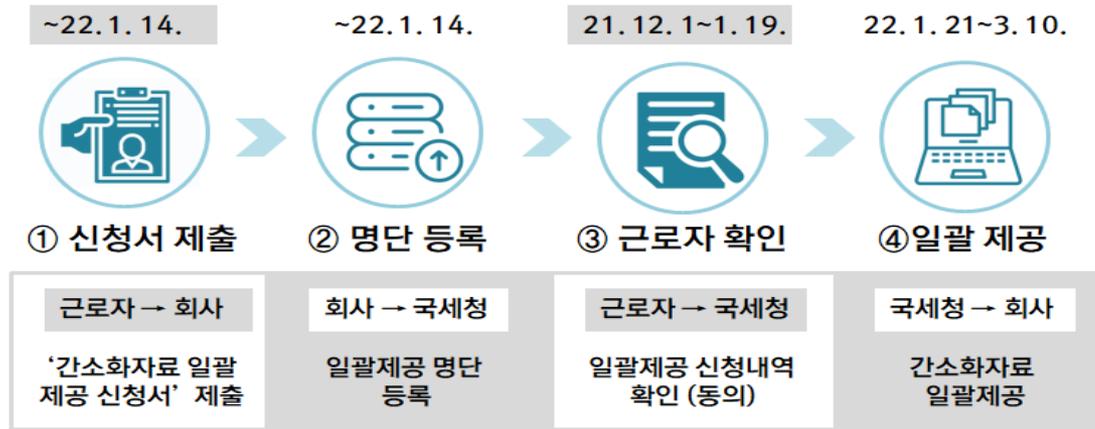
▲ 내용 펼치기

웹 페이지 메시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가 아닙니다.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Ⅲ. 국세청홈텍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절차



- ① (근로자) 2022.01.14.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 제출.
- ② (회사) 2022.01.14. 일괄제공신청 근로자명단 홈텍스 등록.
- ③ (근로자) 2021.12.01.~ 2022.01.19. 홈텍스에서 일괄제공신청 내역 확인(동의), 민감정보 등 삭제.
- ④ (국세청) 일괄제공신청 확인(동의)된 근로자 간소화자료 회사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홈텍스 구축.
- ⑤ 회사는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 받아 연말정산 진행.

# Ⅲ. 국세청홈텍스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근로자들의  
편리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 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금년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으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Step.01	Step.02	Step.03
<p><b>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b></p> <p>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 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합니다.</p> <p>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급여액, 10월~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p>	<p><b>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b></p> <p>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Step.01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p> <p>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p>	<p><b>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b></p> <p>국세청은 Step.02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최근 3년 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p> <p>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p>

#### 이용방법 문의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 126 ▶ 1 ▶ 5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 ☎ 126 ▶ 1 ▶ 3 ▶ 2
- 연말정산 세법상담 : ☎ 126 ▶ 2 ▶ 3

# 제2강 지급명세서

2021년 12월

# 목 차

- I. 간이지급명세서
- II. 지급명세서
- II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I. 간이지급명세서

1. 근로장려금제도 도입, 실업수당  
근로소득 및 3.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 6월 : 7월말  
7월~12월 : 다음연도 1월말

2. 3.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변경)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로 변경

3.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변경)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로 변경

**2020년 상반기분 (1월~6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7월 31일까지 꼭 제출하세요

제출바로가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 '21년 1분기(1-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2분기(4-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종전)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종전과 동일(변경없음)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하반기(7-12월) → '22년 1월 말일까지 제출

국세청  
알림·소식 | 국민소통 | 국세신고안내 | 국세정책/제도 | 정보공개

일용근로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달 말일까지 꼭 제출해주세요!**  
※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바로가기 ▶

## Ⅱ.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4대보험 정산자료등

1. 근로소득 및 3.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다음연도 3월 10일

2. 퇴직소득(분리과세)  
→ 다음연도 3월 10일

3. 기타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  
→ 다음연도 2월 말일

4. 근로자 연말정산 위한 소득(급여)자료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대장  
→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 12월급여 1월지급시 2월10일까지 신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21년 7월 지급분(8월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3)

### 제출 주기 단축 안내

\*명칭 변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제출 시기

**종전**

21년 6월 까지 소득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4,7,10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7월 말일까지

**변경**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 7월) 제출

####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종전	변경 <sup>1)</sup>
미제출시 (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0.25%
	간이지급명세서	0.25%	0.25%
자연제출시 <sup>2)</sup>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0.5%	0.125%
	간이지급명세서	0.125%	0.125%

1)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부터 적용  
2) 자연제출 기준 :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세 [源泉稅] →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세금.

1. 원천징수란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자 대신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2. 원천징수의무자란 법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하고 납세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근로자 등)를 의미.
3. 원천세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4.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며, 사업자는 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
5. 갑종근로소득세는 세금종류이고, 원천세(=세금의 원천징수)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하나.

###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일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12월분 급여지급이 다음해 1월이면 2월 10일까지

종합소득세(5월 10일) 대상소득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3.3%)
3. 기타소득(8.8%)
4. 연금소득
5. 이자소득
6. 배당소득

퇴직소득

비거주자양도소득

#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3. 16.> [전자신고제출됨]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귀속연월	2021년 06월
③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③ 지급연월	2021년 06월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사용직 소재지	사업장 사용직 소재지	④ 지급연월	2021년 06월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인)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사용직 소재지	사업장 사용직 소재지	사업장 사용직 소재지	⑤ 지급연월	2021년 06월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인)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사용직 소재지	사업장 사용직 소재지	사업장 사용직 소재지	⑥ 지급연월	2021년 06월

다음달 10일 제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③ 당월 조정 환급세액	④ 납부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⑧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⑨ 농어촌 특별세
개인 - 거주자 - 비거주자	연말정산	간이세액 A01	7	13,630,000	120,900				
		중도회사 A02							
		일용근로 A03							
		합계 A04							
		본납부액 A05							
	퇴직소득	가산계 A10	7	13,630,000	120,900			120,900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산계 A20							
		매월징수 A25	8	3,570,000	107,100				
	기타소득	연말정산 A26							
		가산계 A30	8	3,570,000	107,100			107,100	
		연금계좌 A31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법인	가산자산 A49								
	그외 A42	3	600,000	40,000					
	가산계 A40	3	600,000	40,000			40,000		
	연금계좌 A41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산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통해지출징수액 A69								
비거주자양도소득 A70									
내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8	17,800,000	268,000				268,000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⑧ 조정대상 환급세액 (④+⑥+⑦-⑧-⑨)	⑩ 당월 조정 환급세액	⑪ 차월 이월 환급세액 (⑩-⑪)	⑫ 환급 신청액
⑭ 전월 미환급세액	⑮ 기환급 신청세액	⑯ 차감잔액 (⑭-⑮)	⑰ 일반환급	⑱ 순이익(손실) (금융회사 등)	⑲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합계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07월 12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송과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0"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송계명세(10쪽)

세무대리인  
성명    조동근  
사업자 등록번호    [redacted]  
전화번호    031) 480-2162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에 5원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금지    [redacted]  
예금종류    [redacted]  
계좌번호    [redacted]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동질지 80g/㎡)

#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 1. 월 60시간미만 단시간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구분

구분	설명	적용범위		예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상용근로자	월근로시간 60시간미만 (1개월이상~3개월미만)	산재	당연적용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1개월이상 아르바이트생
		고용	적용제외 (3개월이상:당연적용)	
일용근로자	1개월미만 고용근로자 일or시간단위 고용계약 일급형식 보수 지급	산재	당연적용	식당에서 일당지급 10일간 주방 보조업무하는 근로자
		고용	당연적용	

### 2. 사업소득

- ① 영리목적 자기계산과 책임하 계속·반복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② 원천징수대상 : 저술가·작곡가등 일정한 자 직업상 제공 인적용역
- ③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 ④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 = 지급금액 x 3.3%(지방소득세 포함)
- ⑤ 원천징수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3	모델	940902	꽃꽂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3. 기타소득

- ①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 과세소득으로 열거한 소득
- ② 상금, 복권당첨금 등, 자산등의 양도·대여·사용 등의 대가, 보상금등 우발적 소득
- ③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다음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 라디오 TV 등에서 해설, 연기심사등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용역
- 그 밖의 고용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④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 ⑤ 위③의 인적용역 일시적 제공하는 경우 60% 필요경비
- ⑥ 위④ 300만원이하 선택적분리과세,  
 $A - (A \times 60\%) = 300\text{만원}$   
 $A = 750\text{만원}$  (750만원이하이면 종합합산과세 혹은 분리과세)

- ⑦ 세율 20%(지방소득세 10%) = 22%  
 $\{A - (A \times 60\%)\} \times 22\% = 8.8\%$   
 기타소득  $\times 8.8\% =$  기타소득세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3호서식 (4)] (2020.03.13 개정) (5쪽)

과세연도 2021년

[V]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V]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 ] 소득자보관용 [V] 발행자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외국인

정수 의무자 (1)사업자등록번호 (2)법인명 또는 상호 (3)성명  
 (4)주민(법인)등록번호 120827-\*\*\*\*\* (5)소재지 또는 주소 (6)비산동

소득자 (6)성명 (7)주민(사업자)등록번호  
 (8)주소

⑨ 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담금까지 소득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61· 63· 65· 78 제외) 6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64 사회·공동품 양도소득  
 65 직무발명보상금 71 상금 및 부상 72 광업권 등 73 지역권 등 74 주택임주지체상금  
 75 일고료 등 76 강연료 등 77 종교인소득 78 사채금 79 자문료등 80 통신판매 대여 소득  
 8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64· 68· 69· 71~ 77· 79· 80 제외)

연월일	연월일	⑩ 지급총액	⑪ 비과세 소득	⑫ 필요경비	⑬ 소득금액	⑭ 세율	원천징수세액			
							⑮ 소득세	⑯ 지방소득세	⑰ 농림세	⑱ 계
2021 06 24	2021 06	165,000		99,000	66,000	20.0%	13,200	1,320		14,520

165,000 x 60% = 99,000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하여 영수(지급)합니다.

2021년 06월 24일

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사홍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이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 정수의무자본의 (4)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⑩ 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항호아목에 따라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 ⑫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외급 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 ⑰ 란부터 ⑱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승마투표권 등	① 권면 합계액 10만원 이하, 적중 개별투표당 환급금 10만원 이하 ② 권면 합계액 10만원 이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 100배이하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	
당첨상품 등	건별 200만원 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 이하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구분	과세최저한(인적용역 건별5만원 이하) 이내		과세최저한 초과
	인적용역소득(일시 문예창작소득)	그 외 기타소득	모든 기타소득
원천징수 납부	-	-	납부의무
원천징수 신고	신고의무	신고의무	신고의무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의무	-	제출의무

기타소득이 과세최저한(인적용역 5만원이하) 범위 이내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할 금액은 없지만

① 원천징수신고의무 ②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발생함.

### ① 원천징수신고의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 과세되지 않는 소득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함.

### ②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동법 동조 동항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대부분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913-*****										
주 소													
NO	귀속 연월일	지급 연월일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고용보험료	신제보험료	차인지급액
1	2021 06 2021 06 30	2021 06 30	300,000	180,000	120,000	20%	24,000		2,400				273,600
원천징수	원천징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18-*****											
주 소													
NO	귀속 연월일	지급 연월일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고용보험료	신제보험료	차인지급액
1	2021 06 2021 06 30	2021 06 30	200,000	120,000	80,000	20%	16,000		1,600				182,400
원천징수	원천징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03-*****											
주 소													
NO	귀속 연월일	지급 연월일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고용보험료	신제보험료	차인지급액
1	2021 06 2021 06 30	2021 06 30	100,000	60,000	40,000	20%							100,000
원천징수	원천징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03-*****											
주 소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2019. 12. 31 개정) (1쪽)

귀속 연도 2021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외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인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주인)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소득세	⑩ 지방소득세	⑪ 농어촌특별세	⑫ 계
			1	1	100,000		40,000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번호	⑭ 소득자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외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지급총액	㉑ 비과세 소득	㉒ 필요 경비	㉓ 소득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소득세	㉗ 농어촌특별세	㉘ 계
1	62		03-*****	1	2021	1	100,000		60,000	40,000	20%				

다음해 2월 말일 제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3. 16.> [전자신고제출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귀속연월 2021년 06월  
지급연월 2021년 06월

원천징수외무자: 이, (순)  
사업자(주인): 이, (순)  
전화번호: 031-450-2162

원천징수영수증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과세이외 일부비과세포함)	징수세액	당월 조정 환급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개인 - 거주자 - 비거주자						
간이세액	A01	7 13,630,000	120,900			
중도회사	A02					
알용근로	A03					
합계	A04					
연간정산						
반납금액	A05					
납부금액	A06					
가장계	A10	7 13,630,000	120,900			120,900
연간계좌	A21					
그외	A22					
가장계	A20					
매월징수	A25	8 3,570,000	107,100			
연말정산	A26					
가장계	A30	8 3,570,000	107,100			107,100
연간계좌	A41					
총계	A43					
매월징수	A44					
연말정산	A45					
가상자산	A49					
그외	A42	3 600,000	40,000			
가장계	A40	3 600,000	40,000			40,000
연간계좌	A44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장계	A47					
이자소득	A50					
당소득	A60					
저축성세액	A69					
자양도소득	A70					
법인 내 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8 17,800,000	268,000			268,000

⑬ 한금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㉔+㉕+㉖)	당월 조정 환급세액 (㉔-㉕)	차월 이월 환급세액 (㉕-㉖)	환급 신청액
㉔ 전월 미환급세액	㉕ 차감환급액	㉖ 신규환급액 (금융회사 등)	㉗ 기타환급액	㉘ 환급회계	㉙ 환급회계
미환급세액	신상환급액	환급회계	환급회계	환급회계	환급회계

원천징수외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외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07월 12일

원천징수외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조동근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조동근 (서명 또는 인)

송과 세무시장 귀하

신고서 부록 등 첨부 여부 \* 해당사항 'X' 표시를 합니다. 부록(4-5)쪽 한권(7쪽-9쪽) 송계함(10쪽)

세무대리인 조동근 (서명 또는 인)

성명 조동근  
사업자 등록번호 031-450-2162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예금종류 예금종류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다음달 10일 제출

#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대상자에 대한 상세내역 없다.  
‘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에 대한 상세내역 나타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16.> [연간신고제출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에 환급신청서

발행일자: 2021년 09월  
신고연월: 2021년 09월

원천징수 의무자: [가명]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가명])  
대표자 (성명): [가명] (사업장 소재지: [가명])  
전화번호: 031) 480-2162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원천징수명세	징수세액	납부세액
		①(간접) (가계소득, 퇴직소득 등)	②(직접)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개인 - 거주자	간접소득 A01	8	31,683,333	1,488,910		
	중도회사 A02					
	일용근로 A03					
	환급 A04					
	연말 A05					
	연말 A06					
	가장액 A10	8	31,683,333	1,488,910		1,488,910
	안금계좌 A21					
	그외 A22					
	기타 A29					
법인 - 거주자	매월징수 A25	4	8,028,680	240,860		
	연말징수 A26					
	가장액 A30	4	8,028,680	240,860		240,860
	중도매월징수 A43					
	소득 연말징수 A44					
	가산징수 A49					
	그외 A42					
	가장액 A40					
	안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징수 A46						
가장액 A47						
이차소득 A50						
배당소득 A60						
계속통제회사주주분할 A69						
비과세주당소득 A70						
내외국법인원천징수 A80						
수정신고 세액 A90						
총합계 A99	12	39,712,013	1,729,770			1,729,770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여,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가명] (사업 또는 인) 2021년 10월 12일

세무대리인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가명] (사업 또는 인)

인안: [가명] (사무국장 귀하) (사무장 또는 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2] (2021. 05. 17 개정)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 ] 지급자 보관용 [ ] 지급자 제출용 )

원천징수 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 상세사항

① 법인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소득인원	⑤ 총 지급액 계 (복합계)
[가명]	[가명]	[가명]	4명	8,028,680
④(연도)	2021	⑦(지급월)	[ ] 1월 [ ] 2월 [ ] 3월 [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x] 9월 [ ] 10월 [ ] 11월 [ ] 12월	

소득자 인적사항 및 월별 소득내역

일련번호	①(연월) (연월) (연월) (연월)	②(연월) (연월) (연월) (연월)	③(연월) (연월) (연월) (연월)	④(연월) (연월) (연월) (연월)	⑤(연월) (연월) (연월) (연월)	⑥(연월) (연월) (연월) (연월)	⑦(연월) (연월) (연월) (연월)	⑧(연월) (연월) (연월) (연월)	⑨(연월) (연월) (연월) (연월)	⑩(연월) (연월) (연월) (연월)
1	940909 (가월) (가월) (가월) (가월)	[가명]	주인(사업자) (주인) (주인) (주인)	1,내국인	1,340,000	3	37,470	3,740	41,210	
2	940909 (가월) (가월) (가월) (가월)	[가명]	주인(사업자) (주인) (주인) (주인)	1,내국인	250,000	3	7,500	750	8,250	
3	940909 (가월) (가월) (가월) (가월)	[가명]	주인(사업자) (주인) (주인) (주인)	1,내국인	250,000	3	7,500	750	8,250	
4	940909 (가월) (가월) (가월) (가월)	[가명]	주인(사업자) (주인) (주인) (주인)	1,내국인	6,279,680	3	188,300	18,830	207,220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여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제출자: [가명] (사무장 또는 인)

#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하여는 급여대장을 통한 소득(총급여액)파악이 필요.

2021년09월분 급여대장

정렬: 부서별 [귀속:2021년09월] [지급:2021년09월25일] page: 1 / 3

인적사항		기본급여 및 제수당				공제 및 차인지급액						영수인	
사원번호	성명	기본급	지방유지비	식대	기타수당	육아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입사일	직급						기타공제	건강보험 정산	장기요양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공제합계	
퇴사일	부서											차인지급액	
2		5,900,000		100,000				235,800	205,800		23,700	477,020	47,700
2020-04-01									166,740	17,090			1,173,850
							6,000,000						4,826,150
1		2,800,000		100,000		100,000		156,730	121,470		13,990	67,300	6,730
2019-12-16									31,680	3,240			401,140
							3,000,000						2,598,860
11		4,200,000	200,000		450,000			234,000	190,930	37,200	21,990	332,620	33,260
2020-01-01													850,000
							4,850,000						4,000,000
14		2,600,000						120,780	105,750	32,800	12,180	60,450	6,040
2020-01-01													338,000
							2,600,000						2,262,000
16		2,600,000						109,750	100,040	28,000	11,520	60,220	6,020
2020-03-02													315,550
							2,600,000						2,284,450
17		1,833,333						81,040	65,740	17,060	7,570	15,730	1,570
2020-05-19													188,710
							1,833,333						1,644,623
19		3,000,000	200,000					124,690	128,620	32,000	14,810	84,850	8,480
2020-06-27													393,450
							3,200,000						2,806,550
안산	합계 7명	22,933,333	400,000	200,000	450,000	100,000		1,062,790	918,350	147,060	105,760	1,098,190	109,800
									198,420	20,330			3,660,700
							24,083,333						20,422,63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1	2	3	4	5
이상 미만					
5,960	5,980	541,830	494,670	405,440	386,690
5,980	6,000	546,370	499,180	408,080	389,330
6,000	6,020	550,900	503,690	410,720	391,970
6,020	6,040	555,440	508,200	413,360	394,610
6,040	6,060	559,980	512,720	416,000	397,250

(2004.7.27 제정)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X] 매월신고남부대상자 확인 [ ] 반기별 신고남부 대상자 확인)

발급번호: [ ] 관리번호: [ ]

납세자: ①성명: [홍길동] ②주민등록번호: [ ]

종업원자: ③주소 또는 거주: [ ] ④상호 또는 명칭: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 ] ⑦대표자: [ ] ⑧주민(법인)등록번호: [110134-\*\*\*\*\*]

⑨확인서의 사용 목적: [ ] ⑩제출처: [ ] ⑪소요수량: [0] 통: [0]

연월	원급여액	세액	해납부(예정)연월일	연월	원급여액	세액	해납부(예정)연월일
2021-01	6,000,000	494,690	2021-02-10				
2021-02	6,000,000	494,690	2021-03-10				
2021-03	86,000,000	33,722,180	2021-11-10				
2021-04	6,000,000	494,690	2021-05-10				
2021-05	6,000,000	520,750	2021-06-10				
2021-06	6,000,000	477,020	2021-07-10				
2021-07	6,000,000	477,020	2021-08-10				
2021-08	6,000,000	477,020	2021-09-10				
2021-09	6,000,000	477,020	2021-10-10				
				계	134,000,000	37,635,080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2일 [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사업장소재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빌로미딩 603호  
세무사: [ ] 등록번호: [ ] 전화번호: 031-480-2162

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세무사: [ ] 조동근 (인)



#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hometax.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The '원천세' (Withholding Tax)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 red arrow points from this menu item to the '원천세 신고하기' (Report Withholding Tax) button in the '원천세' section. Other visible elements include the '202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2021 2nd Quarter Estimated Value-added Tax Reporting/Payment Notice) and the '세금증류별 서비스' (Tax Service by Type) menu.

## 원천세

홈택스에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주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하기
- 근로사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세금 납부하기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중고인소득 간이세액표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원천징수의무자)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근로자)

### 과세자료제출

- 신중금융상품 중 조세특례 적용
- 연금수령개시및해지명세서
-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제출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신청/제출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포기 신청
-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액 환급신청
-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 납부기한등 연정(경수유예)신청
- 세금신고 삭제요청

- 신고 이용시간: **매일 06:00~24:00**
- 납부 이용시간: **매일 07:00~23:30**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바로가기

- 자주 찾는 메뉴
- 세금증류별 서비스
- My 홈택스
- 홈택스 안내
- 로그아웃

#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hometax.go.kr)



원천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 (신고이용시간: 06:00~24:00)
-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정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후 접수결과(정정)를 꼭 확인하고, [Step 2. 신고내역]에서 접수중,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 출력은 [Step 2. 신고내역]의 납부서(≡)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 정기신고 방법**
  - 매월 신고납부기한: 매월 16일부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반기 신고납부기한: 1~6월 지급은 7월10일까지, 7~12월지급은 다음년도 1월10일까지 신고합니다.
  - 정기신고 때에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시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국제환급금액좌표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후신고 방법**
  - 국제청에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기신고 마감기간 이후부터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16년 귀속분]부터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고의 납부서 출력 및 조회납부는 신고 당일에만 가능하며 다음날부터는 [국제납부]-[자기납부]에서 직접 입력 후 출력,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신고 방법**
  - 국제청에 이미 제출했던 신고서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을 때 [정기신고마감 후 다음날]부터 신고할 수 있으며 [16년 귀속분]부터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는 이전 신고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의 납부서 출력 및 조회납부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국제납부]-[자기납부]에서 직접 입력 후 출력,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전자신고 설명서

1. 작성방식(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

1)기본정보 입력

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② 귀속연월, 사업자기본사항 및 원천징수신고구분(연말정산, 소득처분, 현금신행 여부)과 신고할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1)귀속년월 : 지급한 소득에 해당하는 귀속월을 작성하여 귀속년도는 5년 전까지 선택 가능  
 \* 귀속년월은 사업자치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전에만 수정 가능합니다.

(2)연말정산포함 : 연말정산 소득(A04,A05,A06,A08,A09) 입력 시 체크

(3)소득처분신고 : 소득처분 신고 시 체크

(4)현금신행 : 현금액을 차월로 이월하지 않고, 당월에 현금받을 경우 체크

(5)소득종류선택 : 해당 귀속, 지급월에 동시에 지급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전부 체크

(6)수정신고(세액) 항목 : 수정신고 직후에 신고하는 정기신고면 체크하여 수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환급 세액을 차감하고 징수세액 란에 입력.

18페이지

## Ⅲ.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텍스(hometax.go.kr) → 원천세 전자신고 설명서

1. 작성방식(홈텍스 직접 작성 제출)
  - ① 기본정보입력
  -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 ④ 원천징수에색환급신고서 부표
  - ⑤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⑥ 기납부세액명세서
  - ⑦ 신고서 작성완료
2. 변환방식(회계프로그램 생성 파일을 변환하여 전송)
  - ① 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 메뉴 [파일변환신고]클릭
3. 신고결과 확인
4. 사례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① 납부세액만 있는 경우
  - ② 환급세액으로 납부세액을 조정환급 처리하는 경우
  - ③ 연말정산분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 ④ 전월미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 제3강 재무제표

2021년 12월

# 목 차

- I. 재무제표
- II. 법인세신고
- III. 공익법인결산서류

# I. 재무제표

상법 제29조(상업장부 종류·작성원칙) ①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상법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상법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 고시한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상장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 의무 있는 비상장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 의무 없는 비상장기업

# I. 재무제표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위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

영리법인	비영리조직	공익법인	사학기관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종교단체	학술장학기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	운영계산서	수지계산서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자금계산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기본금변동계산서		
			부속명세서	기타부속명세서			
주석	주석	주석	주기, 주석			주석	

\*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석(註釋)사항.

# I. 재무제표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외부감사법 )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 손익계산서)
  - 령 제2조(재무제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1. 자본변동표
    - 2. 현금흐름표
    - 3. 주석(註釋)

## II.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한국회계기준원)

2.16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한다.

(1)기업명 (2)보고기간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3)보고통화 및 금액단위

## III. 중소기업회계기준

제2조(적용) 이 기준은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4조(재무제표)

①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자본변동표
-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I. 재무제표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상증법상 외부회계감사 의무 또는 결산서류공시의무 있는 공익법인 * 의료·학교법인, 종교법인 제외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는 기업
재무제표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주식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식
자본	자본 및 자본금의 개념 없으며 대신 순자산 개념을 사용함.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주주지분), 자본금은 주주 납입 법정자본금
순자산·자본 구분	① 기본순자산 * ② 보통순자산 ③ 순자산조정 *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①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③ 자본조정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⑤ 이익잉여금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 구분하여 표시	구분경리 요구되지 않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부채로 인식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I. 재무제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

AT 자격시험



감사인증기준

윤리기준

회계기준

- 회계뉴스
- 기업회계기준 전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 공익법인회계기준
- 비영리조직회계기준
- 특수분야회계기준
- 종전기업회계기준
- 공개초안
- 질의/회신
- IFRS 실무사례
- 회계기준원 기고문
- 회계기준 요약 강의

- 01.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
- 02.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비영리조직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2017.11.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	실무지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상증법 제50조의4에 의하여 상증법 제16조 1항의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			
2017.07.	비영리조직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해설서: 한국회계기준원

# I. 재무제표(비영리조직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7. 20.

제1조(목적)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목적은 비영리조직이 일반목적재무제표 작성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인격 유무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 비영리조직에 적용한다.

제3조(보고실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비영리조직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제5조(재무제표 작성 목적) 이 기준에 따라 비영리조직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이를 외부에 보고하여 기부자, 회원, 채권자, 비영리조직에 자원을 제공하는 그 밖의 주체(예: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부) 등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비영리조직이 제공한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비영리조직의 관리자들이 수탁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때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제6조(재무제표) ①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현금흐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대한 주석

② 비영리조직이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음에 따라 소실되는 정보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면 수지계산서로 현금흐름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지계산서란 수입과 지출의 결과를 집계한 표를 말한다.

# I. 재무제표(공익법인회계기준)

##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목적.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제3조(보고실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② ‘복식부기’란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

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재무제표)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위 제1호 및 제2호 서류에 대한 주석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는 이 기준에 따른다.

- I.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II. 손익계산서
- III. 현금흐름표
- IV. 자본변동표

### III. 현금흐름표

당기순손실	(37,000)
감가상각비	1,000
시설구입(-)	(5,000)
차입(+)	50,000
출자(+)	10,000
기말현금	19,000

### I.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및 자본	
현금	19,000	차입금	50,000
금융자산	5,000	퇴직부채	5,000
시설장치	5,000	자본금	10,000
감가누계액	(1,000)	이익잉여금	(37,000)
총계	28,000	총계	28,000

### II. 손익계산서

비용		수익	
매입(원가)	40,000	매출(수익)	50,000
퇴직금	5,000	보조금	5,000
판매관리비	46,000		
감가상각비	1,000	당기순손실	37,000
총계	92,000	총계	92,000

영리법인	비영리조직	공익법인	사학기관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종교단체	학술장학기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	운영계산서	수지계산서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자금계산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기본금변동계산서		
			부속명세서	기타부속명세서			
주석	주석	주석	주기, 주석			주석	

## II. 법인세신고

### II. 손익계산서

비용		수익	
매입(원가)	40,000	매출(수익)	50,000
퇴직금	5,000	보조금	5,000
판매관리비	46,000		
감가상각비	1,000	당기순손실	37,000
총계	92,000	총계	92,000

- ①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 통장에 구분 적립한다.  
 ② 부족한 경비 조달은 회비 및 후원금으로 42,000원을 조달하였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3.13.> (단위: 원)

사업 연도	2021.01.01. ~ 2021.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①	101.결산처상 당기순이익	01	(37,000)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102.익금산입	02	47,000	
	103.손금산입	03	0	
소득 금액	104.자가감소소득금액(101+102-103)	04	10,000	
	105.기부금한도초과	05	0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54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10,000	
②	108.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08=107)		10,000	
과세 표준 계산	109.이월결손금	07		
	110.비과세소득	08		
	111.소득공제	09		
	112.과세표준(108-109-110-111)	10	10,000	
	159.선박과세표준이익	55		
③	113.과세표준(112+159)	56	10,000	
산출 세액 계산	114.세율	11	10%	
	115.산출세액	12	1,000	
	116.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 제96조)	13		
	117.세율	14		
	118.산출세액	15		
119.합계(115+118)	16	1,000		
⑤	양도 소득	135.등기자산	31	
토 지 등	차익	136.미등기자산	32	
	137.비과세소득		33	
양도 소득	138.과세표준(135+136-137)		34	
	139.세율		35	
	140.산출세액		36	
	141.감면세액		37	
	142.차감세액(140-141)		38	
	143.공제세액		39	
	144.동업기업 법인세분액(가산세제외)		58	
	145.가산세(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146.가감계(142-143+144+145)		41	
	147.수시부과세액		42	
기납부 소득	148.( )세액		43	
	149.계 (147+148)		44	
	150.차감납부할 세액 (146-149)		45	
⑥	161.미환류소득		59	
환류 소득 법인	162.세율		60	
	163.산출세액		61	
	164.가산세액		62	
	165.기납부세액		63	

손익계산서	
제19(당)기 : 2021.01.01~2021.12.31.	
회사명 :비영리법인	(단위:원)
과목	제19(당)기 금액
	I.매출액
상품매출	50,000
II.매출원가	40,000
(1)상품매출원가	40,000
1.기초상품재고액	-
2.당기상품매입액	40,000
3.기말상품재고액	-
III.매출총이익	10,000
IV.판매비와관리비	52,000
직원급여	30,000
<b>퇴직급여</b>	<b>5,000</b>
복리후생비	4,400
여비교통비	1,000
접대비	1,000
통신비	500
세금과공과	1,000
<b>감가상각비</b>	<b>1,000</b>
지급임차료	4,800
교육훈련비	1,000
지급수수료	1,000
잡비	1,300
V.영업손실	(42,000)
VI.영업외수익	5,000
지자체보조금	5,000
회비및후원금	
잡이익	
VII.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잡손실	
VI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000)
IX.법인세비용	-
X.당기순이익	(37,000)

# II. 법인세신고

## 1. 결산조정

손익계산서(기업회계기준 위반1)			손익계산서(기업회계기준 위반2)		
제19(당)기 : 2021.01.01~2021.12.31.			제19(당)기 : 2021.01.01~2021.12.31.		
회사명 : 비영리법인 (단위: 원)			회사명 : 비영리법인 (단위: 원)		
과목	제19(당)기 금액		과목	제19(당)기 금액	
I. 매출액		50,000	I. 매출액		50,000
상품매출	50,000		상품매출	50,000	
II. 매출원가		40,000	II. 매출원가		40,000
(1) 상품매출원가		40,000	(1) 상품매출원가		40,000
1. 기초상품재고액	-		1. 기초상품재고액	-	
2. 당기 상품매입액	40,000		2. 당기 상품매입액	40,000	
3. 기말 상품재고액	-		3. 기말 상품재고액	-	
III. 매출총이익		10,000	III. 매출총이익		10,000
IV. 판매비와관리비		52,000	IV. 판매비와관리비		47,000
<b>퇴직급여</b>	<b>5,000</b>		<b>퇴직급여</b>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비	1,000	
잡비	46,000		잡비	46,000	
V. 영업손실		(42,000)	V. 영업손실		(37,000)
VI. 영업외수익		47,000	VI. 영업외수익		47,000
지자체보조금	5,000		지자체보조금	5,000	
회비및후원금	42,000		회비및후원금	42,000	
VII. 영업외비용		5,000	VII. 영업외비용		5,000
<b>고유목적사업준비금</b>	<b>5,000</b>		<b>고유목적사업준비금</b>	<b>5,000</b>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0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
IX. 법인세비용		(500)	IX. 법인세비용		(500)
X. 당기순이익		(500)	X. 당기순이익		4,5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2.23.>

사업연도	2021.01.01. ~ 2021.12.3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명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목	②금액	③소득처분		④과목	⑤금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법인세등	500	기타사외유출					
퇴직급여	5,000	유보	54				
합계	5,500			합계	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2.23.>

사업연도	2021.01.01. ~ 2021.12.3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명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목	②금액	③소득처분		④과목	⑤금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법인세등	500	기타사외유출					
합계	500			합계	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3.13.> (단위: 원)

사업연도	2021.01.01. ~ 2021.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①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500)	4,500	
	소득조정	02	5,500	500	
	금액	103. 손금산입	03	0	0
	104. 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04	5,000	5,000	
	105. 기부금한도 초과	05	0	0	
	106. 기부금한도 초과이월액손금산입	54			
	107. 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5,000	5,000	
② 과세 표준 계산	108.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08=107)		5,000	5,000	
	109. 이월결산금	07			
	110. 비과세소득	08			
	111. 소득공제	09			
	112. 과세표준(108-109-110-111)	10	5,000	5,000	
113. 선박과세표준이익	55				
③ 산출 세액 계산	113. 과세표준(112+159)	56	5,000	5,000	
	114. 세율	11	10%	10%	
	115. 산출세액	12	500	500	
	116. 지정유보소득(법인세법 제96조)	13			
	117. 세율	14			
	118. 산출세액	15			
119. 합계(115+118)	16	500	500		

# II. 법인세신고

## 2. 신고조정

손익계산서			
제19(당)기 : 2021.01.01~2021.12.31.			
회사명 :비영리법인		(단위: 원)	
과목		제19(당)기 금액	
I.매출액		50,000	
상품매출		50,000	
II.매출원가		40,000	
(1)상품매출원가		40,000	
1.기초상품재고액		-	
2.당기상품매입액		40,000	
3.기말상품재고액		-	
III.매출총이익		10,000	
IV.판매비와관리비		52,000	
퇴직급여		5,000	
감가상각비		1,000	
판매관리비		46,000	
V.영업손실		(42,000)	
VI.영업외수익		47,000	
지자체보조금		5,000	
회비및후원금		42,000	
VII.영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VI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	
IX.법인세비용		(500)	
X.당기순이익		4,5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2.23>			
사업 연도	2021.01.01. ~ 2021.12.31.	법인명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①과목		②금액	③소득처분
법인세등	500	기타사외유출	
퇴직급여	5,000	유보	54
합계	5,500		
④과목		⑤금액	⑥소득처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	△유보	
합계	5,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3.13> (앞쪽)			
사업 연도	2021.01.01. ~ 2021.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①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101.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4,500
	102.익금산입	02	5,500
	103.손금산입	03	(5,000)
	104.차가감소득금액(101+102-103)	04	5,000
	105.기부금한도초과	05	0
	106.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54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104+105-106)	06	5,000
② 과세 표준 계산	108.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08=107)		5,000
	109.이월결손금	07	
	110.비과세소득	08	
	111.소득공제	09	
	112.과세표준(108-109-110-111)	10	5,000
	159.선박과세표준이익	55	
③ 산출 세액 계산	113.과세표준(112+159)	56	5,000
	114.세율	11	10%
	115.산출세액	12	500
	116.지점유보소득(법인세법 제96조)	13	
	117.세율	14	
	118.산출세액	15	
	119.합계(115+118)	16	500

# Ⅲ. 공익법인 결산서류

## ④ 공익법인 공시서류 내역

### ①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표준서식

- 기본사항
-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 ② 기부금품의 수집 및 지출 명세서 ※ 건수가 많음
- ③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③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③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③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④ 재무상태표
- ④ 운영성과표
- ④ 감사보고서
- 2020 감사보고서.pdf

잉여금변동내역	
Ⅰ. 전기 잉여금	200,166,812
Ⅱ. 당기운영손실	(16,355,621)
Ⅲ. 당기잉여금	183,811,191

재무상태표						
제 4 기 2021년 01월 31일						
제 3 기 2020년 01월 31일						
공익법인명 : 비영리법인						(단위 :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1	공익목적사업2	기타사업3	통합4	공익목적사업5	기타사업6
<b>자산</b>						
Ⅰ. 유동자산	184,061,511	184,061,511	0	287,034,516	287,034,516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33,891,500	33,891,500	0	287,034,516	287,034,516	0
2. 미수금	3,560	3,560	0	0	0	0
3. 기타	150,166,451	150,166,451	0	0	0	0
가. 선납세금	74,370	74,370	0	0	0	0
나. 기타채예금	50,092,081	50,092,081	0	0	0	0
다. 정기에적금	100,000,000	100,000,000	0	0	0	0
Ⅱ. 비유동자산	34,609,632	34,609,632	0	0	0	0
1. 투자자산	34,609,632	34,609,632	0	0	0	0
가. 기타	34,609,632	34,609,632	0	0	0	0
① 특정현금과예금	34,609,632	34,609,632	0	0	0	0
<b>자산총계(Ⅰ+Ⅱ)</b>	<b>218,671,143</b>	<b>218,671,143</b>	<b>0</b>	<b>287,034,516</b>	<b>287,034,516</b>	<b>0</b>
<b>부채</b>						
Ⅰ. 유동부채	34,859,952	34,859,952	0	86,867,704	86,867,704	0
1. 선수금	0	0	0	80,000,000	80,000,000	0
2. 예수금	34,859,952	34,859,952	0	6,867,704	6,867,704	0
Ⅱ. 비유동부채	0	0	0	0	0	0
1. 장기차입금	0	0	0	0	0	0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	0	0	0	0	0
<b>부채총계(Ⅰ+Ⅱ+Ⅲ)</b>	<b>34,859,952</b>	<b>34,859,952</b>	<b>0</b>	<b>86,867,704</b>	<b>86,867,704</b>	<b>0</b>
<b>순자산</b>	<b>0</b>	<b>0</b>	<b>0</b>	<b>0</b>	<b>0</b>	<b>0</b>
Ⅰ. 기본순자산	0	0	0	0	0	0
Ⅱ. 보통순자산	183,811,191	183,811,191	0	200,166,812	200,166,812	0
1. 적립금	0	0	0	0	0	0
2. 잉여금	183,811,191	183,811,191	0	200,166,812	200,166,812	0
Ⅲ. 순자산조정	0	0	0	0	0	0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0	0	0	0	0	0
2. 유형자산재평가이익	0	0	0	0	0	0
<b>순자산 총계(Ⅰ+Ⅱ+Ⅲ)</b>	<b>183,811,191</b>	<b>183,811,191</b>	<b>0</b>	<b>200,166,812</b>	<b>200,166,812</b>	<b>0</b>
<b>부채 및 순자산 총계</b>	<b>218,671,143</b>	<b>218,671,143</b>	<b>0</b>	<b>287,034,516</b>	<b>287,034,516</b>	<b>0</b>

# Ⅲ.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익법인 공시서류 내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기본사항

·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기부금품의 수집 및 지출 명세서 ※ 건수가 많은

주식 등의 출현·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감사보고서

· 2020 감사보고서.pdf

운영성과표						
제 4 기 2020년 02월 01일부터 2021년 01월 31일까지						
제 3 기 2019년 02월 01일부터 2020년 01월 31일까지						
공익법인명 : 비영리법인						(단위 :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1	공익목적사업2	기타사업3	통합4	공익목적사업5	기타사업6
I. 사업수입	83,598,388	83,598,388	0	92,584,311	92,584,311	0
1. 기부금수입	82,000,000	82,000,000	0	82,000,000	82,000,000	0
2. 보조금수입	0	0	0	0	0	0
3. 회비수입	1,100,000	1,100,000	0	820,000	820,000	0
4. 투자자산수익	498,388	498,388	0	3,102,975	3,102,975	0
가. 이자수익	498,388	498,388	0	3,102,975	3,102,975	0
5. 기타	0	0	0	6,661,336	6,661,336	0
가. 기타수입	0	0	0	6,661,336	6,661,336	0
II. 사업비용	99,939,888	99,939,888	0	125,592,156	125,592,156	0
1. 사업수행비용	58,897,160	58,897,160	0	83,046,850	83,046,850	0
가. 기타비용	58,897,160	58,897,160	0	83,046,850	83,046,850	0
①생보사업원가	58,897,160	58,897,160	0	83,046,850	83,046,850	0
2. 일반관리비용	41,042,728	41,042,728	0	42,545,306	42,545,306	0
가. 인력비용	30,617,368	30,617,368	0	24,817,740	24,817,740	0
① 급여	25,729,470	25,729,470	0	24,109,490	24,109,490	0
② 퇴직급여	3,287,658	3,287,658	0	0	0	0
④ 복리후생비	1,024,980	1,024,980	0	0	0	0
⑥ 기타	575,260	575,260	0	708,250	708,250	0
나. 시설비용	3,134,470	3,134,470	0	3,559,696	3,559,696	0
① 시설유지관리비	3,134,470	3,134,470	0	3,559,696	3,559,696	0
다. 기타비용	7,290,890	7,290,890	0	14,167,870	14,167,870	0
① 여비교통비	184,400	184,400	0	0	0	0
② 소모품비	874,420	874,420	0	180,600	180,600	0
③ 지급수수료	3,588,180	3,588,180	0	8,393,840	8,393,840	0
⑤ 업무추진비	0	0	0	290,000	290,000	0
⑥ 회의비	1,273,000	1,273,000	0	1,419,980	1,419,980	0
⑧ 통신비	82,680	82,680	0	740,350	740,350	0
⑨ 세금과공과금	1,250,810	1,250,810	0	1,356,500	1,356,500	0
⑩ 운반비	15,400	15,400	0	46,000	46,000	0
⑪ 도서인쇄비	22,000	22,000	0	495,000	495,000	0
⑫ 사무용품비	0	0	0	4,600	4,600	0
⑬ 세계대회사업원가	0	0	0	1,241,000	1,241,000	0
III. 사업이익(손실)(I-II)	(16,341,500)	(16,341,500)	0	(33,007,845)	(33,007,845)	0
IV. 사업외수익	29	29	0	3,102,985	3,102,985	0
1. 기타	29	29	0	3,102,985	3,102,985	0
가. 이자수익	0	0	0	3,102,975	3,102,975	0
나. 잡이익	29	29	0	10	10	0
V. 사업외비용	14,150	14,150	0	603,279	0	603,279
1. 기타	14,150	14,150	0	603,279	0	603,279
가. 잡손실	14,150	14,150	0	603,279	0	603,279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0	0	0	0	0	0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0	0	0	0	0	0
VIII. 세전 당기운영이익(손실)	(16,355,621)	(16,355,621)	0	(30,508,139)	(29,904,860)	(603,279)
IX. 법인세비용	0	0	0	0	0	0
X. 당기운영이익(손실)(VIII-IX)	(16,355,621)	(16,355,621)	0	(30,508,139)	(29,904,860)	(603,279)